



학생해외연수학점인정 규정

제 정 일	2001.10. 1
개 정 일	2020. 8.10
개정차수	5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해외연수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0. 1. 1)
- 제 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해외연수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적용한다. (개정 2020. 1. 1)
- 제 3조 (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학생해외연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(개정 2014. 5. 1, 2020. 1. 1.)
 ② (삭제 2014. 5. 1)
- 제 4조 (삭제 2014. 5. 1)
- 제 5조 (삭제 2014. 5. 1)
- 제 6조 (연수신청) 해외연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 기간 내에 주관부서로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 (개정 2020. 1. 1)
- 제 7조 (연수기간) 학생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. (개정 2009. 6. 1, 2020. 1. 1)
 1. 교양교과목의 경우 동·하계 방학기간 또는 학기 중 소정의 과정(2학점 기준 30시간 이상)을 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 1. 1)
 2. 전공교과목의 경우 동·하계 방학기간 또는 학기 중 소정의 과정(2학점 기준 30시간 이상)을 이수하여야 한다. (신설 2009. 6. 1, 개정 2020. 1. 1)
- 제 8조 (개설교과목) 해외연수의 개설교과목은 외국어, 문화탐방, 실습 및 견학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이 가능하다. (개정 2009. 6. 1, 2020. 1. 1)
- 제 9조 (학점인정) ① 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서울대학교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8.10)
 1. 영어연수, 중국어연수, 일본어연수 교과목(2학점)으로 하고,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.
 2. 총장이 정하는 교과목에 대해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1. 1)
 ② (삭제 2020. 8.10)
 [전문개정 2009. 6. 1]
- 제10조 (수강신청) ① 연수 종료자는 연수 증빙서류(연수성적표, 연수이수(수료)증명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 6. 1)
 ② 교양학점 인정의 경우 해외연수신청서로 수강신청을 대체한다. (개정 2009. 6. 1, 2020. 8.10)
 ③ (삭제 2020. 1. 1)
- 제11조 (성적평가기준) ① 성적평가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수 성적표 또는 연수이수(수료)증명서의 결과에 따라 “P” (60점 이상)로 평가한다. (개정 2002. 9. 1, 2020. 1. 1)
 ② (삭제 2002. 9. 1)
- 제12조 (장학사정 대상) 학생해외연수로 인정된 학점은 정규 학기 이외의 별도 학기로 인정하며 해당 학기 장학사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 (개정 2009. 6. 1, 2020. 8.10)
- 제13조 (졸업학점) 해외연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성적은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(개정 2009. 6. 1)

제14조 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